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처분사실 공표 및 교육이수 명령의 기준시 변경〉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18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처분사실 공표 및 교육이수 명령의 기준시 변경	2
※ 참고자료	
[참고] 법제처 법령해석(25-0733)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23.
3. 회 부 일 : 2025.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시정명령 또는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공표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사실상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원산지표시법령상 공표제도와 교육 이수 의무의 취지에도 부합함.

이에 공표와 교육이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행정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1. 처분사실 공표 및 교육이수 명령의 기준시 변경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처분사실 공표 및 교육이수 명령의 기준시를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에 따른 ‘처분의 확정시’에서 ‘처분시’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생략)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u>처분이 확정된</u>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 ----- <u>처분을 한</u> ----- ----- ----- ----- ----- ----- ----- ----- -----.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③ ~ ⑤ (생략)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u>처분이</u>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① ----- ----- ----- ----- -----<u>처분을</u>한-----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9조제1항은 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하여 표시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위반 상품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한편,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현행법은 ① 제9조제2항에서 처분 관련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② 제9조제2제1항에서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령하도록 규정함.

이와 같은 현행법 규정의 취지는 ① 처분사실을 공표하여 위반자의 명예·신용에 일정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②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교육 이수를 통하여 향후의 성실한 제도 준수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 경우, 현행법은 처분사실 공표와 교육 이수명령의 기준시를 ‘처분시’가 아니라 ‘처분의 확정시’로 명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분의 적법성 등을 행정쟁송³⁾을 통하여 다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 처분이 있는 이후에도 쟁송 절차를 거쳐 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처분시와는 별개로, 해당 처분이 법률상의 쟁송 절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취소될 수 없는 시점을 처분의 확정시로 보고 있음.⁴⁾

즉, 처분의 확정시란 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① 제기 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시점⁵⁾ 또는 ②

2) 반대로 정부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이행여부를 ‘착한가격업소’ 평가 기준으로 삼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의 성실한 준수 유인을 제공하고도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행정안전위원회”, 2023, p. 95.)

3) ①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및 ②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또는 특별행정심판)

4) 물론, 처분의 확정 이후에도 처분을 한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함

5) 가령,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으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를 규정하고,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를 규정함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 또는 청구하였으나 당해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해당함.

그런데, 일각에서는 처분시보다 늦은 처분의 확정시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신속한 처분사실 공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교육이수 명령을 통한 제도 준수 유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행정쟁송을 거치는 경우에는 그 진행경과에 따라 처분 이후에 처분의 확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각각의 처분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현장에서는 처분사실 공표와 교육 이수명령을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제처에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조항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법제처는 이에 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시인 ‘처분의 확정시’를 실제 처분의 확정시가 아니라 ‘처분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하였음.⁶⁾

구체적으로는 법제처는 ① 현행법 시행령이 공표기간을 처분의 확정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면서도 공표내용을 처분의 확정일이 아닌 처분일로 규정하는⁷⁾ 취지상, 처분의 확정일을 처분일로 보고 이로부터

6) 법령해석 전문은 검토보고서 마지막의 참고자료를 참고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개월 동안 관련 사항을 공표하는 제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② 원산지표시법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법률에 규정된 처분의 확정일을 처분일로 해석하여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의견임.

【 개정안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25-0733) 주요 내용 】

먼저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처분 내용(제1호), 해당 영업소의 명칭(제2호),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표기간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표를 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처분권자 및 처분일(제6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면서 공표기간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공표기간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은 공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처분일'을 공표하도록 한 것은, 처분이 확정된 날을 처분을 한 날로 보아 처분일부터 12개월까지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려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법은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이고,** 공표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로서 조속히 법위반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고함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시키고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법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 위반사항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표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은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산지표시법령상 공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명단 공표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료: 법제처 법령해석, 25-0733

다만, 이와 같은 해석은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기준시를 처분의 확정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률에서 명시된 사항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근거로 다르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경우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는 점 등에서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부의 자체적인 해석을 통하여 법률상에 명시된 제도를 달리 적용하려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행정의 원리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통일성 있는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써 법원 등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이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처분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황에서,⁸⁾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에 관한 사실이 공표된 자가 그 공표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며 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8)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하 “위반사실등”이라 한다)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자에 대한 처분사실 공표 및 교육이수 명령의 법률상 기준시를 명시적으로 처분의 확정시에서 처분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령해석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지니는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한편, 위반자에게도 신속하게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제도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처분의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공표의 적시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합리성 측면 외에도 침익적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구제 측면 역시 고려하여 균형 있는 시각에서 그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처분사실 공표의 기준시를 처분의 확정시에서 처분시로 변경한다면,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더라도, 이미 처분시부터 처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특히, 해당 제재처분이 행정절차를 통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는 경우, 이미 이루어진 처분사실 공표 역시 행위의 근거가 없

게 될 것이므로, 행정청은 공표에 따라 훼손된 당사자의 명예·신용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필요가 있게 됨.

이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공표를 정정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⁹⁾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공표의 정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명예·신용이 공표 이전의 상태로 충분하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처분사실 공표에 관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서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처분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처분사실 공표 관련 유사 입법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제57조를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9)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⑧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 5. 확인

따라서, 개정안에 관하여는 신속한 처분사실 공표를 통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처분의 침익성을 고려한 당사자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

질의제목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관련문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4915(2025. 9. 19.)

1. 질의요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¹⁰⁾은 같은 법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거래행위 금지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자가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의 공표기간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로 규정(제1호)하고 있는바,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이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하는지?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2. 회답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은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3.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¹¹⁾.

먼저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처분 내용(제1호), 해당 영업소의 명칭(제2호),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표기간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표를 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처분권자 및 처분일(제6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면서 공표기간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법령의

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공표기간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은 공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처분일’을 공표하도록 한 것은, 처분이 확정된 날을 처분을 한 날로 보아 처분일부터 12개월 까지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려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법은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이고, 공표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¹²⁾로서 조속히 범위반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고함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시키고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바¹³⁾,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법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 위반사항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표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은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산지표시법령상 공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무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원산지 거짓 표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거래행위 금

12) 김동희, 행정법 I 제15판, 박영사 p.450 참조

1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례 참조

지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표시법령에서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처분은 공정력이 있으므로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점¹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제21조), 청문 등 의견청취(제22조), 문서를 통한 처분(제24조제1항) 등의 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처분이 확정된 날을 처분을 한 날이 아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날로 본다면,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이 달라지게 되므로, 공표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을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였으나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14)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례 참조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8항에 따라 공표된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공표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은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명단 공표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처분 내용

2. 해당 영업소의 명칭

3. 농수산물의 명칭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5.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해양수산부

2의2. 관세청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6. 한국소비자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⑤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및 처분일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④·⑤ (생략)